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12. 4. 김정호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 12.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3. 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6. 3. 1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3. 12.)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정호의원)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위임·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1)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임·위탁의

1)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근거를 두어야 함²⁾.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그린창업생태계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중으로, 사업의 수행·관리 업무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표 1] 현행법 등 근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사업시행 주체
		'25	'26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주력산업 분야, 지방소멸위기 지역 중소기업 등 육성을 위한 사업화 및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85,081	84,681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산업육성 (제주)	지역주력산업 분야, 지역연고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육성을 위한 사업화 및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5,013	4,613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산업육성 (세종)	지역주력산업 분야, 지역연고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육성을 위한 사업화 및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2,796	2,596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R&D)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1,560	96,939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대응 기반 구축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운영 및 경영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특별 지원지역으로 지정	3,783	3,793	중기부 (한국테크노파크 진흥회 등)
그린창업생태계 기반구축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친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린스타트업타운 내 복합허브센터 구축비 지원	13,505	22,500	중기부 (창업진흥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24.12., pp. 488.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이러한 위탁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하여 지역상황에 부합하는 지원정책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개정안에서 업무 수탁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전국의 19개 테크노파크(TP)로, 현재 지역산업 정책기획,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 지원, 공동연구개발·공동장비 활용 등을 통한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고, '26년 1월 기준 테크노파크 별 평균 정원은 186명, 예산은 1,703억원 수준임.

[표 2]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현황

- **(근거)**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
 - * 산업기술단지 :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역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
- **(지정현황)** 총 19개 테크노파크 (광역자치단체당 1개* + 경기대진, 포함)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7개
- **(기능)** ① 지역산업 정책기획, ②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 지원, ③ 공동연구개발, 공동장비 활용 등을 통한 사업화 지원 등
- **(조직)**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특화센터 등으로 구성

- **(TP현황)** 19개 TP 평균 정원 186명, 입주기업 수 116개사, 보유 장비 314대, 예산 1,703억원('26.1월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직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직원이나 개인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³⁾에 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⁴⁾에서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에 따른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개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지만,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수탁자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지방공기업법」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위임 및 위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더욱 안정적으로 협력체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무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방자치단체와 적절히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위탁 대상기관을 법률에 특정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업무 수행 민간인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위탁 대상기관을 법률에 특정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 민간인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조항을 추가함(안 제33조제2항, 안 제34조 신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3조제2항 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등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로 한다.

안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u> <u>②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부 장관 또는 시·도사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등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중소기업부 장관 또는 시·도사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u>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 ----- ----- -----. ③ (개정안과 같음)

	<u>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제33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34조(벌칙) (현행 제33조와 같음)</u>	<u>제35조(벌칙) (현행 제33조와 같음)</u>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제35조로 하고, 제5장에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u> <u>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u>

<u>제33조</u> (벌칙) (생략)	<u>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u>제35조</u> (벌칙) (현행 제35조와 같음)
-----------------------	---